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허상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 1. 높임과 공손
 - 2. 공손과 발화수반행위
 - 3. 공손과 간접화행
 - 4. 공손과 완곡어법
- III.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공손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손법은 특정한 언어형식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는 존대 의향의 정도를 드러내는 화용론적인 범주로서, 경어법, 발화수반행위, 간접화행, 완곡어법 등 여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경어법은 문법범주로서 화자가 청자, 문장의 주체·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드러내지만, 공손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손은 발화행위로서 발화수반행위를 지니며, 간접화행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공손을 실현한다. 완곡어법 역시 직접적인 것을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체면 손상 회피 등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는 의도에서 공손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손과 관련된 각각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손의 영역을 보다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공손법, 경어법, 발화수반행위, 간접화행, 완곡어법

*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외래교수.

I. 머리말

공손법이 언어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 레이코프(Lakoff)에 의해서이며, 국내에서는 조준학(1979) 이후로 ‘공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경어법에 관련된 연구성과와 비교해볼 때 공손법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 국어 경어법 연구가 실제 사용적인 측면보다는 언어 형식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연구되어 왔고, 경어법이 있기 때문에 ‘공손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공손법은 화자가 청자나 문장의 주체·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드러내는 문법범주인 경어법과 달리, 특정한 언어형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는 존대 의향을 정도를 드러내는 화용론적인 범주이다. 그러므로 공손법은 언어 형식 외에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심리적 거리, 발화상황 등 언어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공손법은 화용론적 범주로서 경어법, 발화수반행위, 간접화행, 완곡어법 등 여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공손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각각 다루거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손법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손법의 영역을 공고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II.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1. 높임과 공손

먼저 높임과 공손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손(politeness)’이란 용어가 언어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 레이코프(Lakoff)에 의해서이다. 영어학에서 ‘공손법’이 등장한 것은 영어는 우리말과 같은 경어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조준학(1979) 이후로부터 ‘공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제껏 문법현상으로서만 높임이나 공손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조준학(1979) 이후 공손이론이 한국어에 적용되면서 화용론적 특성으로서 공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¹⁾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차적으로는 우리말에는 경어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손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높임(honorifics)과 공손(politeness)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높임을 실현시키는 방법에는 선어말어미 ‘-시-’, 종결어미, ‘-계, -께서’와 같은 조사, ‘진지, 말씀; 계시다, 잡수시다’ 등과 같은 높임어휘, ‘-님’과 같은 높임접미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틀어 높임표현이라 한다.

(1) ㄱ. 내가 잘못했어/제가 잘못했습니다.

ㄴ. 선생님께서 오신다.

(2) ㄱ.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ㄴ.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처럼 경어법은 문법범주로서, 대체적으로 문법형태소로 실현된다. 하지만 경어법은 문법형태소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²⁾ 높임어미를 실현한다고 해서 상대를 높일 수 있다면,

1) 우리말을 대상으로 한 ‘공손’의 본격적인 논의는 조준학(1980)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조준학(1986), 김영희(1990), 김희숙(1991), 전해영(1995), 김선희(1996), 이원표(1996), 노은희(1999), 구현정(2001), 구현정(2004), 전해영(2004), 전정미(2007)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들의 연구를 살펴 보면, 공손의 개념이나 본질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고, 다른 언어와의 비교연구나 공손원리의 적용,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는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고, 비문법적이라 할 수 없다.

경어법은 사회적인 요인이나 관계에 따라서 어떤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압존법의 경우를 보자.

- (3) ㄱ.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 ㄴ. 아버지가 {왔습시다/왔어요}.

(3ㄱ)은 문법적인 관점에서는 무방한 것이지만, 손자가 할아버지께 하는 말로써는 부적합하다. (3ㄴ)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법적인 지식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문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두 옳은 문장이기 때문이다.³⁾

우리말에는 이처럼 경어법이 있어 상대방에게 공손이나 높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높임과 공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높인다고 해서 공손한 표현일까? 다음의 예를 보자.

- (4) ㄱ. 나가십시오.
- ㄴ. 조용히 해주십시오.

2) 경어법의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에서 언급되어 왔다. 박영순(1976), 황적륜(1976), 서정수(1984), 성기철(1995) 등 참고할 것.

3) 요즘 '압존법'의 규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김태엽(2007:206)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압존법이라 불려오던 대우 표현이 이제 엄격한 언어적 규범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영순(2007:172)에서도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낮추어 말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1·20대 이전의 젊은이나 어린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낮추어 얘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요즘 실제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압존법'이 강력한 언어 규범이 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 사장 : 오달현 씨! 일하러 가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달현 : 애가 워낙 얌전하고 영특해서 별로 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장 : (쌍심지 켜며) 참, 어이가 없네.

<미우나 고우나, 7회>

(4)는 ‘-히시오’라는 높임어미를 실현하였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감 상으로 그리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가라, 조용히 해달라’가 일반적으로 부정적 내용의 발화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나)보다 (4ㄱ)의 명령조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것 역시 (4ㄱ)의 ‘나가다’가 (4나)의 ‘조용히 하다’보다 부정적인 내용을 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의 예는 사장과 직원(달현)과의 관계인데 평소에는 사장이 직원인 달현에게 낮춰 말을 하는데 이 날은 직원(달현)이 직장에 아이를 데려와 사장 이 화가 난 상태이다. 이 때 사장은 합쇼체를 사용하는데 공손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높임어미를 실현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에게 공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공손과 높임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⁴⁾

이처럼 하나의 발화가 공손표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조건 이외에 화용적인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적인 조건은 공손법에 관여하는 언어적 요소로서 높임표현을 포함한 경어법을 말하는 것이고, 화용적인 조건은 공손법에 관여하는 언어 외적 요소로서 문법적인 조건 외에 화·청자의 관계, 대화의 장면(setting), 분위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상황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통해 상황이 있는 발화와 상황이 없는 발화를 비교해 보자.

4) 조(Cho, 1982)에서는 근본적으로 존경의 형태인 ‘honorifics’가 ‘politeness’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게 됨을 설명하였다(김영실(1996:39)에서 재인용).

(6) 오달현 씨! 일하러 가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7) 사장 : 오달현 씨! 일하러 가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달현 : 애가 워낙 안전하고 영특해서 별로 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장 : (쌍십지 켜며) 참, 어이가 없네.

<미우나 고우나, 7회>

(6)의 경우 아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장으로밖에 공손성을 판단할 수 없다. (6)의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씨’라는 존칭어도 쓰고, 합쇼체로 물었으므로 공손한 표현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주어진 (7)의 예문을 보자. 화자와 청자는 사장과 직원(달현)의 관계인데, 직원(달현)이 직장에 아이를 데려와 사장이 화가 난 상태이다. 존칭어 ‘씨’와 합쇼체를 사용하였지만 사장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뒤의 지문 ‘쌍십지 켜며’를 통해서이다. 이처럼 공손표현은 한 문장만으로는 공손표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

이처럼 공손표현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언어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심리적 거리, 발화 장면 등이 있을 수 있다. 처음 만난 사이일 경우는 서로 공손하게 존대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는 경우, 서로에게 역시 존대를 할 것이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친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제3자가 대화에 끼어드는 경우에는 이전의 높임 단계를 사용하지 않고 존대를 사용할 것이다. 이처럼 공손표현은 사회적·심리적 거리나 발화 장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손법은 문법적 요소와 화용적 요소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공손법은 문법적인 조건만 갖춘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손법은 문장이 쓰인 상황을 배제하고 하나의 문장만을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문장의 구조와 함께 화자와 청자가 가정

하고 있는 화용론적 전제나 청자의 추론과정 등 그 문장이 쓰인 언어 내적·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

공손의 문법적인 조건은 높임 또는 안높임의 의미와 관련짓는 문법적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특징이지만, 공손의 화용적 조건은 수의적(optional)이어서 문법상의 높임·안높임 표현을 공손과 불손 그리고 공손과 전혀 무관한 비공손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유도한다.

(8) 공손의 조건

- ㄱ. 문법적 조건 : 높임/안높임
- ㄴ. 화용적 조건 : 공손/불손/비공손

여기에서 공손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공손’의 일반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겸손함’으로 태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태도적인 측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공손, 비공손, 불손이다. ‘공손(polite)’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경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이다. ‘공손(polite)’의 반대말로는 ‘비공손(nonpolite)’과 ‘불손(impolite)’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비공손’은 비격식체가 가지는 특성인 비존대를 뜻하는데, 이것은 존대의 중립(neutral)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나 공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불손(impolite)’은 공손하지 못한 경우 즉, [-공손]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공손은 때로 비공손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불손표현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⁵⁾ 따라서, 공손성(politeness)은 공손, 비공손, 불손을 포함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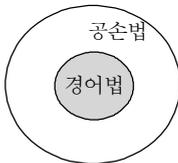
5) 이 절의 목적은 공손의 범주 구분이 아니므로, 공손의 범주에 대한 근거나 실제적인 예시는 다음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9) 공손의 범주

공손	r 공손(polite)	: [+공손]
	┆ 불손(impolite)	: [-공손]
	┆ 비공손(nonpolite)	: [0공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화용론적 관점의 공손은 문법적 요소에 의한 공손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보편적 공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영역은 높임을 바탕으로 좀 더 넓은 범위의 화용론적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공손과 높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경어법과 공손법의 관계



2. 공손과 발화수반행위

이 절에서는 발화행위에 대한 앞선 논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발화수반행위가 공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전의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공손표현은 일종의 발화행위(speech act)로서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과 관련지어 공손 개념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 화자가 발화를 할 때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무엇인가 행한다는 관점에서 오스틴(Austin, 1962)은 언어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후 서얼(Searle, 1969)은 오스틴(1962)의 이론에 수정을 가해 제시하였다. 언어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1) 언어행위의 분류

- ㄱ. 발화행위(locutionary act)
- ㄴ.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 ㄷ.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

이 세 가지 행위에서 의사소통 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화는 발화수반력과 관련되어 있는 발화수반행위이다. 함축 의미는 발화수반력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공손표현 역시 내재적인 발화수반력을 동반하게 된다. 발화수반행위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공손의 종류와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치(Leech, 1983)는 발화수반 기능이 어떻게 예의(comity)를 갖추고 사회적 목표를 확립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2) 리치의 발화수반(Leech, 1983) 기능

- ㄱ. 경쟁형 발화(Competitive) : 주문하기(ordering), 요구하기(asking), 요구하기(demanding), 청하기(begging) 등
- ㄴ. 사교형 발화(Convivial) : 제공하기(offering), 초대하기(inviting), 인사하기(greeting), 감사하기(thanking), 축하하기(congratulating) 등
- ㄷ. 협동형 발화(Collaborative) : 단언하기(asserting), 보고하기(reporting), 알리기(announcing), 교육하기(instructing) 등
- ㄹ. 갈등형 발화(Conflictive) : 위협하기(threatening), 고소하기(accusing), 저주하기(cursing), 비난하기(reprimanding) 등

이들 발화 중 첫 번째 두 유형은 공손성(politeness)을 잘 유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발화수반 목적이 사회적 목적과 경쟁하는 것으로, 발화수반 기능이 경쟁적이면 공손성은 부정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경쟁적 목적은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공손하지 않다. 그러므로 공손성은 경쟁적 목적에 본질적으로 공손하

지 않은 것을 완화시킨다. 두 번째 유형인 사교형 발화는 발화수반 목적이 사회적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공손하다. 여기에서 공손성은 예의를 갖추는 긍정적 공손 형태를 취한다. 세 번째 유형은 발화수반 목적이 사회적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단언하기, 보고하기, 알리기, 교육하기 등이다. 이때의 공손성은 공손과는 무관하다. 네 번째 유형은 발화수반 목적이 사회적 목적과 충돌하는 것으로, 위협하기, 고소하기, 저주하기, 비난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갈등형 발화는 본질적으로 불쾌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손성에 있어서는 문제 밖이다. 따라서 위의 기능 중에서 경쟁형 발화와 사교형 발화가 공손성과 관련이 있다.

리치(Leech)의 분류는 기능에 기초한 반면, 서얼(Searle, 1979)은 다양한 기준에 기초하여 발화수반행위를 분류하였다.

(13) 서얼(Searle)의 발화수반행위

- ㄱ. 평서발화(Assertives) : 진술하기(stating), 제안하기(suggesting), 자랑하기(boasting), 불평하기(complaining), 주장하기(claiming), 보고하기(reporting)
- ㄴ. 지시발화(Directives) : 주문하기(ordering), 요구하기(commanding), 요청하기(requesting), 충고하기(advising), 추천하기(recommending)
- ㄷ. 위임발화(Commissive) : 약속하기(promising), 맹세하기(vowing), 헌납하기(offering)
- ㄹ. 정표발화(Expressive) : 감사하기(thanking), 축하하기(congratulating), 용서하기(pardoning), 비난하기(blaming), 칭찬하기(praising), 위로하기(condoling)
- ㅁ. 선언발화(Declaration) : 사임하기(resigning), 해고하기(dismissing), 세례하기(christening), 명명하기(naming), 파문하기(excommunicating), 임명하기(appointing), 선고하기(sentencing)

위의 분류에 따르면, 첫 번째 평서발화는 공손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이것은 리치에 의하면 협동형 발화에 속한다. 두 번째 지시발화는 부정적 공손성의 측면이 드러나고 리치의 경쟁형 범주에 속한다. 세 번째 위임발화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리치의 사교형 발화에 속한다. 네 번째 정표발화는 본질적으로 공손하다. 이것은 리치의 사교형 발화에 속한다. 그러나 정표발화 중 비난하기(blaming)는 공손하지 않다. 다섯 번째 선언발화는 수행적 행위라기보다는 제도적 행위로서, 공손성을 유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누군가에게 ‘불손하게’ 선고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세례주는 성직자가 ‘나는 너를 세례하노니...’를 ‘내가 너에게 세례해도 될까?’ 등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선언발화는 공손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열의 발화수반 행위 분류에서는 지시발화, 위임발화, 정표발화가 공손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리치(Leech)에 의하면, 경쟁형 발화와 사교형 발화가 공손성과 관련이 있고, 서열(Searle)에 의하면, 지시발화, 위임발화, 정표발화가 공손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재고해봐야 할 문제는 과연 공손과 무관한 발화가 있을까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어법의 논의에서도 모든 문장 또는 발화가 경어법이 표지되어 경어법의 영역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성기철(1991)에서는 혼잣말에 해당하는 월이라도 반드시 경어법이 수반되어 모든 월이 다 경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반면 임흥빈(1998)에서는 이른바 “절대문”은 경어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여 우리말의 모든 월이 다 경어법의 영역에 들지는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른바 “절대문”의 보기로는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 (14) 가. 오늘은 비가 오다.
 나. 영희가 내일 미국으로 떠나다.

- (15) 가. 돌아오라, 소렌토로.
 나. 무겁고 피로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임흥빈(1998)에서는 위의 보기의 예들이 현실적인 발화 장면에서 구체적인 화자가 구체적인 청자를 향하여 말하는 발화 형식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어법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의 문장이든 청자 없는 문장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위의 문장들이 일기나 신문기사, 구호, 기도 등으로 쓰인다면, 분명히 일기를 읽는 사람, 신문을 읽는 독자, 구호를 듣는 사람, 기도를 듣는 신자 등 불특정하지만 청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른바 “절대문”이라고 하더라도 청자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기보다는 청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라고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16) 가. 방이 덮네.
 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 열중 쉬어. 차렸!

(16가)은 화자가 ‘방이 덮네’라고 발화하였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화자가 혼잣말을 했을 경우이다. 혼잣말은 청자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청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때는 ‘방이 덮네’라는 발화가 공손하다, 불손하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공손표현으로 볼 수 있다.⁶⁾ 두 번째는 (16가)의 문장을 수행문으

6) 한길(2002:42-3)에서도 들을이높임법 실현 여부가 미심쩍어 보이는 보기로 혼잣말을 들고 있다. 만약 혼잣말이 들을이높임법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로 볼 경우,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화자가 (16ㄱ)을 발화했을 경우, 그저 발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화자의 이 발화는 ‘문을 열라’든지 ‘에어컨을 켜라’ 등의 간접 화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청자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공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다면, 청자는 열린 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틀 것이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지위가 같다면, 화자의 말을 혼잣말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거나 ‘방안이 덥지? 여름이 다가 오니까.’와 같은 반응발화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지위라면, 청자가 혼잣말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청자에게 발화한 것이라면, ‘방이 덥네요.’라고 높임법을 실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16ㄱ)을 수행문으로 보는 경우, 대상에 따라 공손성의 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6ㄴ)은 신부가 신도의 고해를 듣고 한 발화이다. 이때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공손한 것도 불손한 것도 아니다. (16ㄷ)은 군대에서의 명령인데, 학교나 군대처럼 제도화된 맥락에서는 공손의 표출이 제외된다. 군대에서의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공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명령이 군대라는 집단의 요구에 합치된다면 군대에서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명령 자체 역시 공손한 것도 불손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경어법을 포함한 공손법 역시 공손과 무관한 발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혼잣말에서 들을이가 없으니까 들을이에게 질문하는 물음법이 불가능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혼잣말에서도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즉, 말할이가 자신을 들을이로 삼아 발화한 경우도 단지 들을이에 대한 의식 정도가 약할 뿐이지 들을이를 전제하지 않은 발화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한길(2002)에서는 혼잣말은 [높임]이나 [낮춤]에 비해 들을이에 대한 의식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들을이높임 정도는 [갈음]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 [갈음]의 영역이 이 논문에서는 [비공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3. 공손과 간접화행

앞 절에서 공손과 발화행위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발화수반행위는 화자가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발화는 하나의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나 때로는 언어 형식과 달리 다른 화행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눌 수 있다.⁷⁾

간접화행은 기본 의미에 입각한 표면적 수행력과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의도된 발화수반력 사이의 불일치성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간접화행은 언어행위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공손’이라는 일반 원리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다. 즉, 간접성을 공손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청, 명령, 지시, 제안, 권유 등과 같은 유형은 직접적인 화행을 표시하지 않고 의문형의 형식을 빌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발화수반력을 완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리치(Leech, 1983)는 같은 명제적 내용일 경우, 발화수반력이 간접적일 수록 공손성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간접 발화수반력은 더 공손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증가시켜 주고, 발화수반력을 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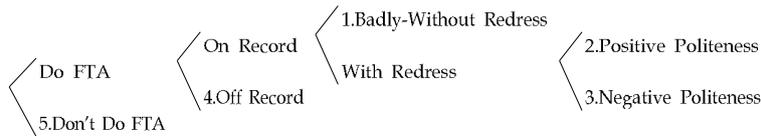
(17)	간접성	덜 공손
ㄱ. Answer the phone.	적다	
ㄴ. I want you to answer the phone.		
ㄷ. Will you answer the phone?		
ㄹ. Can you answer the phone?	↓	↓
ㅁ. Would you mind answering the phone?		
ㅂ. Could you possibly answer the phone?	크다	더 공손

7) 직접·간접화행에 대해서는 허상희(2003:21-2) 참고할 것.

(17)의 예는 리치(1983:108)에서 가져온 예인데, 표현이 간접적일수록 더 공손한 표현이 됨을 알 수 있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은 청자와 화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 본질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손상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체면위협행위라 칭하고 체면위협행위를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체면위협행위 완화전략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8)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의 체면위협행위 완화전략



공손성에 관련되는 전략으로 세 가지 공손(적극적 공손, 소극적 공손, 암시적 공손)을 제시하였다. 위의 전략에 알맞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가. 이봐, 돈 좀 빌려줘.

나. 이봐, 친구, 돈 좀 빌려 줄 수 있나?

다.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 줄 수 있나?

르. 돈이 다 떨어졌네. 오늘 은행 간다는 걸 잊어 버렸어.

(19나)은 적극적 공손 전략으로, 청자에게 호칭을 붙여 가며 적극적으로 공손을 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남의 집이나 옷을 칭찬하는 표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다)은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의 사용으로 공손전략을 수행한다. (19르)은 비공표적 공손 전략인데, 간접적인 발화로 돌려서 자신의 의도를 수행한다. 이처럼 (가)에서 (르)로 갈수록 간접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에

대한 체면위협을 행위나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손 전략의 층위적 모형에서 보다 상위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간접화행의 기능을 공손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20) 가. 줍지?
 나. 줍지요?
 다. 추우시죠?
 르. 줍 줍지(요)?
 무. 문 줍 달아 주시겠어요?

(20)는 문이 열려 있는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한 것이다. (20가-다)의 경우,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20르)의 경우, ‘줍’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이나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20무)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손표현으로, 특히윗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 ‘문을 달아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간접화행은 상대방의 부담을 완하시켜 줌으로써 공손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간접화행이 공손표현인 것은 아니다.⁸⁾ 이제껏 공손과 관련된 간접화행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간접화행을 수행하는 일차적인 기능이 공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된 기능이 공손일 수는 있지만 모든 간접화행이 공손표현인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1) 가. 문 닫고 살면 어디 덧나나?
 나.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8) 이제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간접화행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ㄷ. 너구리 잡니?
- ㄹ. 손님 가신다.

(21)은 이준희(2000:146-7)에서 간접화행의 부정적인 기능에 관해 제시한 예이다. (21 ㄱ)은 문답으라는 지시를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표현이 너무 과장되어 있고, (21 ㄴ)은 문이 열려 있음을 ‘꼬리’라는 어휘가 지닌 부정적인 의미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21 ㄷ)은 ‘담배 꼬라’는 직접적인 지시 대신에 ‘너구리’가 가진 어휘의 연상적 의미로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21 ㄹ)은 화자가 청자와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의미로, ‘이제 그만 가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화행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어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상을 일으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22) 기태,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다.

선재, 단풍, 각자 애드립으로 ‘오셨어요?’, ‘아빠 어서와’하고 일어나 맞고.

중순 : (다가가 가방 받아들며) 왜요 오늘 장관님 모시고 발전소 건설 현장에 간다더니 뭐 잘못됐어요?(하며 애써 다정하게 물으면)

기태 : (무뚝뚝) 나랏일은 신경 쓸 거 없고 집안일이나 잘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중순 : (알미운) 어머 기막혀. 아줌마가 나랏일 걱정 안 하면 누가 하는데? 하여간에 니 아빠 말하는 본새하구는...알미워.

단풍 : (선재 보며 웃는)

<미우나 고우나, 9회>

(22)는 기태(남편)와 중순(아내)의 대화이다. 중순(아내)이 기태(남편)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일이 잘 안 됐냐고 물어보는데 기태(남편)는 ‘나랏일은 신경 쓸 거 없고 집안일이나 잘해’라며 중순의 물음과는 상관없는 듯한

말을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일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발화하고 있다. 간접화행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불쾌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간접화행에 대한 청자의 불쾌한 반응은 위의 지문 ‘알미운’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간접화행이 모두 공손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간접화행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접화행을 통한 공손표현은 대화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직접화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갈등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⁹⁾

4. 공손과 완곡어법

이 절에서는 원래 표현적 관점으로서의 완곡어법이 ‘공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완곡어법(euphemism)¹⁰⁾은 그리스어 ‘ 좋게 말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유쾌하거나 비위에 거슬리거나 공격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솔직한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모호하고 보다 우회적이며, 덜 구어체적인 용어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웹마스터 사전(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94:468)과 알란과 버리지(Allan & Burrige, 1991:14)에서는 완곡어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¹⁾

9) 간접화행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준희(2000:141-150) 참고할 것.

10) 언어행위를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눈다면, 완곡어법은 간접화행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완곡어법은 간접화행에 속하지만, 또 공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 절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11) 조혜선(1999:303)에서 재인용.

(23) "the use of a word or phrase that is less expressive or direct but considered less distasteful, less offensive, etc. than another"

(24) "Euphemism are alternative to dispreferred expression, and are used in order to avoid possible loss of face. The dispreferred expression may be taboo, fearsome, distasteful, or for some other reason have too many negative connotations to felicitously execute speaker's communicative intention on a given occasion."

첫 번째 정의는 완곡어법이 공손하지 못한 표현 대신에 덜 혐오스럽고, 덜 공격적이며 신중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정의는 완곡어법이 비선호적 표현에 대체되고, 체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며, 주어진 상황에 의사소통적 의도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터부(Taboo)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 등을 피해서 또는 청자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말을 듣기 거북하지 않은 말로 내용 구성을 위해서 완곡어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죽음이나 더러운 것, 신체부위, 성(性) 등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 완곡어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25)와 같다.

- (25) 가. 죽다 → 돌아가시다
나. 변소 → 화장실(化粧室), 해우소(解憂所)
다. 잘난 체하다 → 코가 높다

- (26) 가. 여러분의 세금을 올립니다.
가'. 정부의 세수(稅收)를 늘려야 합니다.
나. XX 누고 오겠습니다.
나'. 화장실 다녀 오겠습니다.
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26)의 예를 살펴보자. 정부가 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26ㄱ)과 같이 발화했다고 하자. 그러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26ㄱ')로 발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이 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보러 간 자리에서 화장실이 급해 (26ㄴ)처럼 발화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26ㄴ') 역시도 어색하다. (26ㄴ'') 정도가 어색하지 않고 곤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처럼 완곡어법은 경어법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관습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요구나 인간 상호관계에서 체면손상을 입게 된다. 이처럼 완곡어법은 정보전달의 기능 외에 공손이나 체면 유지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완곡어법의 종류로는 과장된 표현, 비유적 표현, 우회적 표현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유적 표현을 살펴보면, 비유(比喩)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대화의 원칙에서는 일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라이스(Grice, 1975)의 협력의 원리로 말하자면, 비유는 양의 격률이나 방법의 격률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련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발화했다고 하자.

- (27) ㄱ. 철수는 미련해.
 ㄴ. 철수는 곰 같아.

(27ㄱ)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발화한 것이고, (27ㄴ)은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7ㄱ)의 경우, 청자나 철수는 화자의 직접적인 표현에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27ㄴ)의 경우 화자는 청자나 철수를 배려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당장에 당할 수 있는 체면의 손상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유와 같은 완곡어법은 화자의 의도적인 수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의도가 공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완곡어법은 일종의 표현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체면 손상 회피 등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는 의도에서의 공손의 기능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높임과 공손의 관계를 살펴 보면, 높임과 공손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어법은 높임어미를 실현시켜 성립되지만, 공손법은 문법적 조건 이외에 화용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손표현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외적 요인으로 사회적·심리적 거리, 발화장면 등에 의해서이다. 화용론적 관점의 공손은 문법적 요소에 의한 공손과 구별되는 것으로 그 영역은 높임을 바탕으로 좀 더 넓은 범위의 화용론적 범주라 할 수 있다.

공손표현은 일종의 발화행위로서 발화수반력을 동반하게 된다. 발화수반행위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공손의 종류와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다. 이른바 “절대문”, 혼잣말, 신부의 죄사함, 명령 등은 관점에 따라 공손과 무관한 발화라고 할 수 있지만, 본고의 입장은 공손과 무관한 발화는 없으며, 공손의 범주는 공손, 비공손, 불손으로 본다.

간접화행의 일차적인 기능을 일반적으로 공손으로 본다. 모든 간접화행이 공손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화행을 통해 대화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직접화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상

대방과의 정서적인 갈등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완곡어법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이다. 완곡어법은 경어법처럼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관습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요구나 인간 상호관계에서 체면손상을 입게 된다. 모든 완곡어법이 공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체면 손상 회피 등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는 의도에서의 공손의 기능은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 구현정(2001), 「조건 담화와 공손법」, 『언어과학연구』 23, 언어과학회, 1-22쪽.
-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11-3, 담화인지언어학회, 1-23쪽.
- 김선희(1996), 「공손법의 원리와 실제」, 『목원대학교 논문집』 29, 목원대학교, 5-24쪽.
- 김영실(1996), 「언어적 공손 현상의 화용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쪽.
- 김영희(1990), 「표현의 실효성과 공손 원리」, 『배달말교육』 8-1, 배달말교육학회, 79-100쪽.
- 김희숙(1991), 「현대국어의 공손표현 연구-경어법과 관련지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3-69쪽.
- 노은희(1999), 「대화 공손전략으로서의 반복표현」, 『선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861-884쪽.
- 박영순(1976), 「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47-65쪽.
- 성기철(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특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2-22쪽.

- 성기철(1995), 「대우법의 화용론적 특성」, 『인문과학』 제2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9쪽.
- 이원표(1996),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나타난 공손법 분석」, 『말』 21-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07-144쪽.
- 전정미(2007), 「요청화행에 나타난 공손 전략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제21호, 한말연구학회, 247-263쪽.
-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국어학회, 125-146쪽.
- 전혜영(2004),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71-92쪽.
- 조준학(1979), 「영어와 국어의 honorifics 비교서설」, 『영어영문학』 72, 한국영어영문학회, 325-340쪽.
- 조준학(1980), 「화용론과 공손의 규칙」, 『어학연구』 16-1, 서울대 어학연구소, 1-11쪽.
- 조혜선(1999), 「완곡어법의 화용론적 설명」,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7, 한국 커뮤니케이션학회, 303-316쪽.
- 허상희(2003), 「우리말 거절 화행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2쪽.
- 허상희(2009), 「공손표현의 개념과 공손체계」,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우리말학회, 3-22쪽.
- 황적륜(1976), 「한국어 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언어와 언어학』 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115-124쪽.

2. 단행본

- 김태엽(2007), 『한국어 대우법』, 역락, 206-7쪽.
-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172-3쪽.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81-123쪽.
- 이준희(2000), 『간접화행』, 역락, 141-150쪽.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태학사, 518-9쪽.
- 한 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42-3쪽.
- Austin, J.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pp.69-74.
- Brown, P. & S.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3-41.
- Lakoff, R(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Chicago Linguistic Society, pp.91-9.
-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04-30p.
- Searle, John R(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건원 역(1987),
<언화행위>, 한신문화사), pp.59-60.

Abstract

A study on several problems related to Politeness in Korean

Hur, Sang-H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Politeness in Korean.

Politeness has not specific linguistic forms in distinct from honorification. But speakers express the degree of politeness as a pragmatic category. Politeness is related to honorification, illocutionary act, indirect speech act, euphemism and so on.

Honorification is a grammatical category, has a difference from politeness. And politeness has illocutionary act as a speech act, is expressed by indirect speech act. Euphemism has also the function of politeness by expressing ambiguously without speaking directly.

Key Words : politeness, honorification, illocutionary act, indirect speech act, euphemism

허상희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외래교수

주소 : (621-749)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번지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전화번호 : (학교)055-320-3734, (휴대폰)010-3575-4616

전자우편 : sh1260@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4월 28일 투고되어
2009년 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6월 16일 게재 확정됨.